

극빈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올리비에 드 쉬테) 보고서 번역본

-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 빈곤철폐를 위한 핵심수단 (A/77/157)

홈리스행동 번역팀

I. 서론

1.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있어 차별은 일상적 경험의 일부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차별로 인해 고용, 교육, 주택,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다. 관리자, 고용주, 임대인에 의한 차별 대우나 멸시maltreatment에 대한 두려움은 빈곤한 사람들이 특정 사회적재social goods나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도록 만든다. 또한 차별은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구직 행위를 하거나 특정 급여를 요구하는 것을 막는다. 즉, 차별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된다. 차별은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과 자신의 아이들이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고, 교육에 대한 투자도 접게 만든다. 차별은, 가난한 사람들이 형사사법체계에서 불공평한 처우를 받는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해주기도 한다. 판사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거나, 반(反) 빈민anti-poor 고정관념에 따른 판결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2005년 빈곤감축전략을 위한 인권적 접근의 원칙과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빈곤은, "낙인, 차별, 불안정성insecurity, 사회적 배제"와 결합하여 복수의 박탈이 "상호 강화"되는 과정이다. <2012년 극빈과 인권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특히 "상호 강화되는 무력감, 낙인찍기, 차별, 배제, 물질적 박탈의 악순환을 경험한다."
3. 이는 가난한 사람들 스스로가 말하는 빈곤의 경험과 조응한다. 사회적 차별은 지난 2000년 발간된 연구서인 <빈자의 목소리Voices of the Poor>의 주요 테마였다. 옥스포드 대학과 'ATD Fourth World'가 "지식의 융합" 기법을 사용해 빈곤층을 대상으로 공동 수행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멸시"가 "빈곤의 숨은 차원들" 중 하나로 주목받았다. 후자의 연구는 "사회적 멸시"를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공동체 내부에서, 혹은 공동체에 의해 일반적으로 취급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고정관념이나 비난, 낙인찍기에 직면한다. "타자화의 과정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질적인 존재이고, 사회적으로 열등하며, 그들의 점잖지 못한 품행거지가 빈곤의 원인이자 결과라고 간주하면서 발생한다." 사회적 멸시는 다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가난한 사람들의 상황과 필요, 희망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는" 제도적 멸시와 모욕으로 이어진다.
4. 극도의 빈곤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인 올리비에 드 쉬터는 아래의 보고서에서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어떻게 벌어지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밝히고 있다. 그는 저소득층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인 빈곤주의(povertyism)를 일상적으로 경험이라고 밝히며,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권리가 어떻게 차별금지를 통해 실현될 수 있는지 서술한다. 사

회경제적 불리함에 기반한 차별 금지를 강화하는 것은 빈곤 퇴치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보고서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II. 반빈민 편견Anti-poor prejudice

5. 빈민을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들로 여기고, 가난을 빈민의 탓으로 돌리는 고정관념은 빈민에 대한 편견을 조장한다. 빈곤을 개인의 잘못으로 여기는 경향은 특히 복지 시스템이 덜 발달된 국가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자신이 속한 사회가 능력주의merit에 기초해 있다고 믿는 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평등은 쉽게 수용된다. 불평등을, 자격 있는 자들은 보상을 받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제재를 받은 결과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담론은 1970년대 이후로 점점 더 지배적 담론이 되고 있다. 심각한 위기의 시기일수록 빈곤의 구조적 요인(포용성 부족으로 인한 빈곤) 또는 제도적 요인(기업 내 학교 또는 승진 시스템)과 관련된 설명이 인기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불황기일수록 반빈민 담론 또한 작동한다. 사람들이 사회적 계층의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서 말이다.

6. 사회에 대한 능력주의적 관점은 빈곤을 개인이 잘못된 선택을 했거나 주어진 기회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처한 상황으로 설명한다. 이런 시각은 가난한 사람들을 사회의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별개의 집단으로 분류한다: 편견은 “우리”와 대조되는 “그들”, “성공한 사람들”과 대조되는 “실패한 사람들”과 같은 정체성 형성 과정의 일부가 된다.

A. 반빈민 차별의 체계적 특성The systemic nature of anti-poor discrimination

7. 반빈민 편견은 삶의 다양한 영역을 부식시킨다. 프랑스에서는, 고용주에게 이력서를 보내는 채용 과정에서 빈곤의 지표(예컨대 임시주거시설의 주소 또는 사회적 기업에서의 경력)가 포함된 증명서를 제시하는 구직자가 30% 더 차별받는 경향이 나타났다. 캐나다의 온타리오 인권 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빈곤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다. 사회적 지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답한 것은 응답자 중 39% 뿐이었다. 네덜란드에서 실시된 연구에 의하면, 저소득층 학생들은, 초등학교 과정이 끝났을 때 치루는 표준화된 시험이 제시하는 중학교과정의 수준에 준해 그들이 추구해야 할 중학교과정의 수준에 관하여 고소득층 학생들에 비해 낮은 수준의 조언을 교사에게 받았다.

8.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은 사회적 결속에 큰 문제가 될 정도로 저소득층에 속하는 개개인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영향을 끼친다. 학교는 불평등을 조장하고 고소득층에서 습득되는 문화적 코드를 장려하는 경향을 보인다. 저소득층 사람들은 집값이 저렴한 특정 지역에 모여 사는데, 이런 곳은 일자리가 적고 오염에 노출될 확률이 더 높다. 장기 실업자와 사회적 인맥이 부족한 사람들은 적절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일자리에 접근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 빈곤층이 의료

비 지불능력의 문제에 더해 의료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치욕적인 경험을 겪는다면, 이들은 의료서비스 이용을 꺼리게 될 것이다.

9. 교육, 주택, 고용 및 의료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의 사례들은 점점 상호 강화되고 있다. 빈곤층이 가난하고 외진 동네에 산다면, 직장을 가기 위해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 이에 고용주들은 그들이 자주 늦을 것이라고 의심할 것이고, 녹지에의 접근 부족으로 인한 건강 악화는 직장에서의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저소득층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진로와 취업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학교에 다니고, 이는 자퇴율의 증가로 이어진다. 고용과정에서 차별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 이는 구조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악순환의 메커니즘이다.

10. 빈민권 편견은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 점에서도 체계적이며, 빈민을 차별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핑계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도록 만들 수 있다. 고용주는 고객들이 좋은 외양과 "올바른" 문화규범을 갖춘 직원에게 서비스를 받길 기대할 수 있다. 학교 운영방향은 학교가 사회적으로 동질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부모들의 압력을 받을 수 있다. 특정 지역의 주민들은 동네주민이 다양화될 때 그들의 재산 가치가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고, 결과적으로 집주인들은 지역사회에 '적합'한 세입자에게만 임대하게 된다. 게다가, 조직 내에서의 차별은 조직 내 의사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저소득층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직에서 내려진 결정들은 빈자들의 특정한 삶의 경험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체계적으로 불리한 것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조직에서의 (일반적으로 공동 선출에 기반을 두는) 선별과정은 저소득층 배경을 가진 개인들이 뽑힐 기회를 줄이게 된다.

B. 고용의 경우 The case of employment

11. 시장이 잘 작동할 경우, 차별은 비합리적이고 최적화되지 못한 행동이기에 없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때때로 제기된다. 하지만 실제로 시장은 사회적인 규범을 수용하고, 지배적인 편견을 반영한다. 집주인이 (다른 거주자가 동의할) "알맞은" 세입자를 찾는 것처럼, 사용자들은 고객이 기대하는 "올바른" 문화규범을 가진 사람을 채용할 것이다.

12. 고용 분야는 빈곤에 대한 편견이 차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강화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편견에 마주하게 되면, 그들은 더 나은 보수를 주는 직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 취득에 덜 투자하게 된다. 그들이 고용 분야에서 더 많이 차별을 겪을수록, 인적 자본을 만들려는 동기는 점점 더 낮아진다. 차별은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롤모델이 부족하도록 만든다.

13.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 직업을 얻는데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빈민에 대한 편견(예컨대 가난한 사람은 게으르다고 믿는)을 가진 관리자 아래에서 일한다면 그들은 낮은 성과를 낼 것이고, 이는 관리자가 가진 편견을 다시 강화시킨다. 특히 "고정관념 위협" stereotype threat(*역주: 특

정 집단의 성원이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상기하게 됨에 따라 실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심리학적 개념)을 마주하게 된다면 더 그럴 것이다.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에서 진행된 실험에서는 카스트가 공개적으로 드러났을 때, 즉 테스트 결과가 카스트에 대한 고정관념을 확증시켜줄 때, 낮은 카스트의 고등학교 신입생은 높은 카스트의 동료와 비교했을 때 더 낮은 미로문제 풀이 능력을 보여주었다.

14. 쉽게 변하지 않는 구조의 결과로써, 빈곤층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은 스스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시장에서의 경쟁으로 인해 사라지지도 않을 것이다. 실제로, 저소득층의 능력과 신뢰성에 대한 잘못된 가정에 기반한 편견은 "통계적 차별"이 될 수 있다. 이는 빈곤과 능력 사이의 관계를 일반화시켜 쉽게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경제적인 도구이다. 장기 실업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경우, 이것은 "합리적인 대중"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구직자가 다른 사용자들에 의해 평가되는 과정에서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고용되지 않고 장기 실업 상태에 놓여있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것이다. 법은 빈곤층의 동등한 기회를 박탈하는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개입해야만 한다.

III. Socioeconomic disadvantage as a "suspect" ground in anti-discrimination law

15. 국제법과 국내법은 일반적으로 성별, 인종, 또는 민족(종족성), 종교, 나이, 장애, 성적 지향 등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데 주력해 왔다. 이와 같은 차별의 조건들은 대부분 대를 이어 물려받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성격을 갖는 "요주의 대상"이어서, 그에 따른 차별 대우는 더욱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된다. 게다가, 차별금지 조치로 보호받는 사람들은 이미 법적 보호가 필요할 만큼이나 역사적으로 편견에 시달려온 이들이기도 했다.
16. 위와 같은 차별금지에 관한 전통적 요구들은 사회 내 여러 집단 간에 나타나는 "수평적" 불평등을 다룰 때 큰 역할을 한다. 빈곤철폐를 위해 수평적 불평등을 드러내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이는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의 피해가 불균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라는 전통적 원칙은, 소득 또는 부의 수준에 따라 생기는 "수직적 불평등"을 다룰 때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런 일은 특히 성별, 민족성 또는 종교와 같은 특정한 속성들로 묶이는 집단의 구성원과,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묶이는 집단의 구성원 간 상관 관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사회에서 일어난다. 기존의 분석들은 사회경제적 불이익이 사회적 지위에 따른 불이익과 일치하지 않을 때,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사회경제적 상태에 따른 차별도 차별금지에 관한 논의 안에서 중요한 대상으로 다뤄져야 한다.

A. 차별 원인으로서의 빈곤Poverty as a source of discrimination

17.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제2항은 "사회적 출신"과 "자산property(프랑스어: 'fortune'; 스페인어: 'posición economica')에 의거한 차별 금지 조항을 포함한다. 이외에도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또는 종교 등에 의거한 차별을 금지한다.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위원회에서는 "빈곤이 차별을 만드는 것처럼, 차별 역시 빈곤을 만들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상기 위원회는 또한 각국 정부에 도입될 반차별 체제에 해당 근거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8.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 제20호(2009)에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거듭 강조했다. 개인 및 개인의 집합은 사회 내 특정 경제, 사회 집단 또는 계층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서로 다르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빈곤 상태로 생활하거나 홈리스인 사람은 그의 사회, 경제적 위치로 인해 광범위한 차별, 낙인찍기 및 부정적 선입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차별과 선입견 등으로 인해 그는 다른 이들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누리지 못할 수 있다(불균등한 접근성, 거절 등). 또한 그는 공공장소 이용에 있어서도 불균등한 접근성과 거절 등으로 인해 제약을 받게 될 수 있다.
19.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제2항에서 "사회적 출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 비해, 위원회는 더욱 광범위한 표현인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사용한다. 후자(이민 노동자와 그 가족 구성원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에도 등장하는 표현이다)는 "사회경제적 불이익"이라는 표현으로도 치환 가능하며, 전자에 비해 그 의미가 명확하다. "사회적 출신"이라는 표현은 개인의 "타고 난 사회적 계급"을 지칭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되기에 "출생(위원회는 이 개념을 '계급 제도 및 그와 유사한 상속 지위에 기반한 혈통'으로 정의한다)"에 대한 조항과 의미가 상당히 중첩된다.
20. "재산" 또는 "사회적 조건"보다는 "사회경제적 취약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경제적 취약성"이라는 표현은 비대칭적이기 때문이다. 이 표현은 고소득자나 부유한 개인에게 특정한 불이익 및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기존의 불평등을 시정하고 가난하거나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한다.
21. 2020년 11월 특별보고관 권고에 따라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66개국이 헌법상의 평등 및 비차별 조항에 '경제적 격차'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사회적 격차 및 그와 관련된 개념을 언급하는 국가는 41개국이다. 차별금지 법안 등에서 빈곤 개념이 그 자체로 활용되는 경우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캐나다의 퀘벡 인권 및 자유 헌장은 현재 차별 금지 조항에 "빈곤"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퀘벡 인권 위원회는 빈곤이 "소득 수준, 직업, 교육 등에 근거하여 누군가에게 귀속되는 계급, 사회적 지위 또는 계층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이 조항에 따라 고용주가 지원자의 수급 여부 및 주거형태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거나,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지 임대를 거부하는 것은 차별행위로 간주된다.

22. 2016년 프랑스에서 빈곤한 가족이 박물관에서 추방되는 일이 있었다. 그들이 풍기는 냄새가 다른 관람객들에게 방해가 된다는 판단을 한 경비원에 의해 벌어진 일이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논쟁이 촉발되었고 그 결과 "사회적 불안정성" 개념이 법적 반차별 체계에 도입되었다. 빈곤(경제적 취약성 la particulière vulnérabilité résultant de sa condition, connue de son origine)을 이유로 한 차별은 현재 범죄로 정의되며 노동법에서도 금지된다. 이 입법 개정안이 채택된 이유는, 부분적으로 빈곤층에게 찍히는 낙인이 높은 수준의 권리 미취득을 설명하기 때문이며, “빈민차별” 현상에 대한 대응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해당 법률 개정으로 급식비를 내지 않은 아이들에게 다른 아이들과 다른 음식을 제공하거나, 무허가 거주지에 살다 퇴출된 아이들이 학교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한 시장의 결정을 프랑스 행정감찰관(Défenseur des droits)이 단속할 수 있게 되었다.
23. 1996년 아파르트헤이트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권리장전은 "사회적 출신"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회적 출신 개념은 계층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차별 금지 조항의 목록들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빈곤층이 계층에 기반 한 차별적 대우를 받을 때 법적으로 차별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회적 출신"이라는 표현은 혈통이나 출생과 무관한 빈곤의 경우도 포괄한다. 같은 법 제9조의 근거를 제공하는 평등축진 및 부당차별방지법은 차별 금지 조항이 적용되는 범위를 전형적인 계층기반적 차별 너머로 확대한다. "계층이 아닌 다른 사유에 기반하여 차별이 자행되는 경우라도 (i) 구조적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영구화하는 경우 (ii)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경우 (iii) 전통적인 계층 기반적 차별에 필적할 정도로 심각하게 개인의 자유와 권리 행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출신에 의한 차별로 간주된다. 해당 법안은 또 '사회경제적 지위'가 차별 금지 사유(제34조) 목록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지시하는 '지시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경제적 지위'는 '빈곤·저고용 상태로 불이익을 받는 자의 사회적·경제적 조건 또는 인식적 조건'으로 정의된다. 행정부가 개정된 법을 정책에 도입할지 여부는 재량에 맡겨지지만, 사법부가 "사회경제적 지위"가 비등락 차별 금지 사유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거나 법 제1조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법은 그러한 판단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 사회정의연맹 대 경찰청장 관례에서 원고들은 범죄율이 높은 빈곤 지역의 치안 유지 자원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는데, 웨스턴케이프주 고등법원은 이것이 "빈곤"을 차별 근거로 한 부당 차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빈곤이 "구조적 불이익을 초래하고 영구화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 행사를 침해한다"며 그렇기에 빈곤을 이유로 한 차별이 사회적 출신을 근거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24. 사회경제적 취약성에 따른 차별의 금지는 법원이 '빈곤 퇴치'에 기여하도록 만든다. 콜롬비아 헌법재판소는 저소득층에게 질 낮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차별로 간주하였으며, "불안정한 경제 상황"이 의료 서비스와 같은 필수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대한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다. 칠레에서는 비공식적 정착지에 사는 가족들(슬럼가 주민들)의 토지 매입

을, "마약사범이나 범죄자들"이 자기네 주변으로 이주하는 것에 반대하는 인근 민간주택 거주자들의 압력으로 인해 지자체가 거부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칠레의 산티아고 민사 법원은 이를 '사회경제적 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로 규정하였다. 아르헨티나의 연방 법원은 빈곤층이 사는 지역에서 전화나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인 것이 "위험구역"에 사는 사람들의 "시장 경쟁력"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 빈곤 상태를 재생산한다고 지적했다. 아르헨티나 대법원은 빈곤 지역의 교통 서비스를 축소하는 것은 헌법 4조에 따라 모든 이용자와 소비자에게 "존엄한 대우"를 제공해야 할 공공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남아프리카 헌법 재판소는 가사 노동자가 산업재해와 질병보상 제정법에서 제외되는 것은 사회보장권의 침해일 뿐만 아니라 인종, 계급 그리고 젠더에 따른 교차 차별이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사례들은 사회경제적 취약성에 근거한 차별금지의 요건이 보건의료의 권리, 주거 또는 노동의 권리의 최소한의 필수적인 수준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권리들을 효과적으로 향유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B. 법원의 역할 The role of courts

25. 사회경제적 취약성이 명시적인 차별금지 사유로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은 차별금지 사유 목록을 조정함으로써 차별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인도 헌법 제14조는 하나의 사례를 제공한다. 이 조항은 사회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법 앞에서의 평등을 보장한다. 하지만 Maharashtra v. Indian 호텔 & 레스토랑 협회 사례에 대해, 대법원은 외설적이고 범죄행위와 성매매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bar dancing"을 금지하면서도 3성급 호텔과 정부 관계기관은 예외로 두었던 1951 봄베이 경찰법 개정안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 법이 질 낮은 품질과 시설에 만족해야 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엘리트(부유층과 유명인)로 불리는 이들은 품위, 도덕성, 인격 면에서 더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황당한 억측에 기반하기 때문에 헌법 14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사회적이고 경제적으로 낮은 카스트나 계급"에 속하는 여성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26. 경쟁을 촉진하는 새 정책의 채택 이후 철도역 소형 카트 사업주가 자격이 취소될 것을 우려함에 따라 촉발된 "Senior divisional Commercial Manager v. SCR Caterers, Dry Fruits, Fruit Juice Stalls welfare association" 판결은 헌법의 "사회 정의" 개념을 근거로 헌법 14조를 해석했다. 그 해석에 따르면, 법은 "평화로운 '시민 혁명'을 조직하는 도구이며 그 구성 요소 중 하나는 노동자 계급처럼 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이다. 이러한 해석은 고용 기회가 부족하거나 전혀 없는 사람들의 취약한 위치, 그리고 더 가난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강조하여 빈곤과 그 영향이 평등 조항 위반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심이 되도록 했다.

C. Challenges

27. 이러한 발전들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법원들은 사회경제적인 불평등에 기반한 차별을 다루는 것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를 꺼린다.

28. 첫째, 빈곤에 속한 사람들은 이질적인 집단이고, 빈곤은 보호 받아야하거나 개인이 바꾸지 못할 “정체성”이 아니라는 주장이 가끔 제기된다. 이 주장이 원칙상으로는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빈곤은 개인이 탈출하기가 어려운 덫이다. 빈민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불리한 처우는 일반적이며, 이러한 고정관념과 차별대우가 문서화되어있기에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동등한 기회를 얻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된다. ‘가난한 사람’이 개인이 평생 동안 속할 사회적 집단으로 고정될 수는 없지만, ‘빈민차별’은 존재하며 그렇게 다뤄져야 한다.
29. 둘째, 저소득층이 직면한 배제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과정에 의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때때로 제기된다. 이 주장은 모든 사회가 결국은 어느 정도의 불평등을 받아들여야 하고, 시장이 덜 가진 집단에게 덜 친절한 것이 불가피하다면, 불평등이 얼마나 허용되어야 하는지의 선택,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한 고려의 실패가 빈민에 대한 차별이 되는지를 결정하는 주체로서 법원은 신뢰받을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한 선택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란 주장인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인구 중 가장 부유한 집단이 정치 체제에 불균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충분한 연구가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난 40년 동안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더욱 악화되었다. 1981~2011년 동안 136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 연구는 “소득 불평등이 증가함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에 비해 부자들은 더욱 강한 정치적 힘과 시민적 자유를 누린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공공지원의 수혜자가 그들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민주주의적 정치과정에 의존할 수 없는 “별도이고 고립된 소수자”이기 때문에, 권리와 자유 헌장 15항의 평등 조항은 저소득층에 의해 요청될 수 있다.
30. 마지막으로, 많은 지역에서 구매력에 기반한 상품과 서비스의 분배는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지불 능력의 어려움을 차별금지의 이유로 포함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상품 공간”에 구매력에 따라서 조건부로 접근하는 것은 해당 상품과 서비스가 사회적 권리의 향유에 필수적인 경우 인권 침해로 초래할 수 있다. 물이나 전기의 공급, 교육과 의료서비스와 같은 영역에서 민영화는 수익 극대화가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배제하지 못하도록 “공공 영역 의무”와 함께 가야 한다. 추가적으로, 물과 위생시설, 음식과 의료 서비스와 같은 필수적인 상품과 서비스는 모두에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특별 보고관은 노동이나 사회보장과 같은 다른 사회경제적 권리들이 반드시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정부에게 상기시켰다. 다시 말해, 국가가 민간사업자를 규제하거나 모든 사람들이 규약상의 권리를 누리기에 적절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필수적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일어나는 차별로부터의 보호라는 국가의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31. 유사하게, 인권위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차별금지조항 26조에 대한 위반 사항을 한 여성의 사례에서 찾았다. 아일랜드에서는 낙태죄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녀는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해서 영국으로 가야만 했다. 위원회는 그녀가 자기 부담으로 그렇게 해야만 했으며, 그녀를 “스스로 모을 수 없는 재정적 비용”을 부담하게 했고, 부득이하게 “그녀와 남편

이 영국에 머물 여유가 없었기에 출산후 12시간만에 더블린으로 돌아가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위원회는 이것을 ”그녀의 의료 수요와 사회경제적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아일랜드의 실패이자 차별이라고 보았다.

32. 더욱이 구매력에 기반한 분배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기반한 차별은 발생할 수 있다. 개인이 지불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수입이나 이웃 때문에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부당했다. 사회지원에 의존하는 사람에게 주택을 빌려주는 것을 거절하는 집주인이나 특정 가난한 이웃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그러한 차별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퀘벡에서는, 법원은 집주인이 사회적 지원 수혜자의 지불 능력 또는 불안정한 고용 형태를 가진 프리랜서 작가와 같은 사람들의 능력에 대한 가정에 근거하여 잠재적 세입자를 배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여러 번 냈다. 또 아르헨티나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의 행정감찰관은 이동통신사가 “위험 지역”이라고 주장되는 마르델플라타 시의 경제적 낙후지역에 인터넷 서비스 설치를 거절한 것이 아르헨티나의 차별금지법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적 지위를 이유로 한 차별을 초래했다고 생각했다. 미국의 경우, 저소득층 가정과 개인에게 부여된 소위 제 8 바우처를 받는 사람들(그들의 위치에서 중위 소득의 50% 미만을 버는 사람들)은 집주인들에게 일상적으로 거부당한다. 필라델피아 지주들의 67퍼센트가 바우처 수급자들을 고려하는 것을 거부했고, 거절율은 인종적,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거주지 분리의 영구화에 기여하는 관행이 있는 LA와 같은 도시들에서 훨씬 더 높다. 실제로 뉴욕시 인권법이 차별금지 근거의 일부로 “합법적인 소득원천”을 포함하는 것은, 그런 관행에 대한 반응이며, 뉴욕 시 인권위원회는 차별행태를 인정받은 업체에게는 바우처를 사용하는 거주민들에게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게하는 등, 이러한 배제형태에 대항하여 세입자나 입주 예정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IV.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framework

33. 평등한 대우의 요건에는 네 가지 개별적인 규범이 포함된다. 첫째, 국가는 규제 및 정책 체제가 빈곤층을 차별하지 않도록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국가는 국가기관(state agent)에서 그러한 차별을 저지르지 않도록 법의 평등한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이 기준은 공공기관이 그들이 내리는 불평등과 빈곤에 관한 결정의 영향을 사전에 평가할 의무를 포함해야 한다. 예컨대, 영국의 사례에서 ‘더 공정한 스코틀랜드 의무(Fairer Scotland Duty)’는 스코틀랜드의 공공기관이 전략적 결정을 내릴 때 사회경제적 불이익으로 인한 결과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고려할(pay due regard)’ 법적 책임을 부여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2021년 평등촉진 및 부당한 차별방지 개정법안(the 2021 Promotion of Equality and Prevention of Unfair Discrimination Amendment Bill) 제24조를 강화해 국가와 공공기관에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을 증진하고 이를” 의무를 부과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국가는 빈곤층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고용주 및 사립 교육 기관 등의 민간 행위자를 규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구조적 또는 제도적인 차별 사례에 대항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차별에 대해

평등하고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34. 다양한 수준에서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규는 직접적인 차별(낮은 소득과 재산을 이유로 불리한 결정을 내리는 것)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빈곤층에게 불균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겉으로만 중립적인 기준이나 절차를 참고하는 간접적인 차별 역시 다뤄야 한다. 이는 읽고 쓰는 능력, 실업, 집이 없는 상태, 거주지(빈곤층 거주 지역) 또는 위에서 보듯 수입원(사회적 지원에 대한 의존)이나 불안정한 형태의 고용 유지 등의 기준을 대상으로 한다. 비공식적인, 혹은 의사결정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할 여지가 큰 절차는 무의식적인 편견을 근거로 빈곤층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화된 기준을 사용하는 것만큼 문제가 많을 수 있다. 예컨대 억양이나 옷차림, 말투, 비언어적 태도 등은 소득이 낮은 배경을 드러내며, 집주인이나 고용주, 교사는 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35. 또한, 빈곤을 경험하는 개인의 특정한 상황을 고려해 적정 거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로 다뤄져야 한다. 빈곤층을 직/간접적으로 차별하지 않는 일반 조치일지라도 빈곤한 상태에 놓인 개인의 개별 상황과 그들의 취약성에 대응하는 데에는 실패할 수 있다. 론 월터스(Lorne Walters) 대 벨기에 소송 사례에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제2조 2항의 차별금지 조항과 결합된 제11조 1항에 따른 주거권의 침해를 발견했다. 이는 개별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채 집주인이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임대종료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법률이 융통성 없이 적용되었음을 고려한 것이다. 위원회는 월터스가 25년 동안 같은 아파트에 살았고, 계약상의 의무를 항상 이행했으며, 현재 수입이 제한된 노인으로서 이웃과 강한 사회적 유대를 맺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아파트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대안도 모색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벨기에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 등 취약계층의 적절한 주거를 위한 권리에 불균형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유연성과 특별한 조치를 도입하기 위해” 임대인이 이유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을 검토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36. 교육과 고용의 영역에서 적절한 시설을 제공할 의무는 특히 빈곤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는 그들의 생애가 비표준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그들이 습득한 기술과 경험적 지식이 정식 졸업장으로 문서화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이는 가치 있게 여겨지고 인정받아야 한다.

V. The role of affirmative action 적극적 조치의 역할

37. 빈곤층이 직면한 구조적 차별에서 비롯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적극적 조치가 필수적이다. 빈곤이나 사회적 배제를 보상하는 재화나 용역의 배분에 관한 조치는 잘 마련되어 있지만, 자산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나 교육에 대한 재정적 장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장학금 제도의 경우, 취업이나 가장 좋은 학교나 대학으로의 접근과 같은 "자격 갖추"에 대한 주류 서사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이는 곳에서는 보편적이지 않고 더 치열하게 경쟁한

다. 그러나 기회의 진정한 평등이 달성되려면 그러한 분야에서 적극적 조치가 더욱 필요하다.

38. 2000년대 중반, 이스라엘은 국가의 최고 명문 대학 입학의 접근을 위한 계급 기반 적극적 조치의 한 형태를 성공적으로 설계했다. 그것은 재정상태뿐 아니라 이웃, 다니는 고등학교,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부모의 교육과 가족 규모 포함), “개인 및/또는 가족의 불리한 상황”까지 근거로 삼아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측정한다. 인도에서는 헌법에 다양한 차별금지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불가촉천민”의 관행을 금지하고 있지만(제17조), 또한 이러한 집단의 구성원들을 위한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15조 4-5항) “사회적, 교육적으로 뒤쳐진 계급 시민의 진보를 위해” 특별한 조치가 채택될 수 있다고도 말한다. 이는 주로 제341조와 제342조에서 언급된 카스트와 집단(tribe)을 위하여 관공청과 교육기관(공립과 사립 모두)에서의 예약석 및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예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16조 제4항은 “국가가 생각하기에 국가의 서비스에 충분하게 대표되지 않는 뒤쳐진 시민 계층에 유리한 임명이나 직위의 유보”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 의무와 일치하여, 중앙 교육 기관(입학 예약) 개정안은 27%의 좌석이 공공 기금을 지원하는 고등 교육 기관에서 “기타 뒤쳐진 계층”을 위해 예약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학의 사회 경제적 다양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정책으로 이어졌다.
39. 적극적 조치는 국제법상 원칙적으로 수용 가능하다; 실제로 인권 위원회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 모두 제도적 차별과 싸우기 위해 그것이 요구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국내 법들은 때때로 그것을 동등한 대우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원칙의 적용으로 규정한다. 국내 법원들은 그러한 정책들이 반-차별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효과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명령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로 올바르게 이해하였다. 인도 대법원은 2009년 자유 및 의무교육법 제12조 (1)(c)에 따라 사립학교에 부과된 아동의 자유 및 의무교육에 관한 요구사항을 라자스탄 사립학교협회 대 인도 연합에서 지지했다. 이 법은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에 속하는 아동이 입학을 추구하는 동안 직면해야 하는 재정적, 심리적 장벽”을 제거하고자 했고, 이 목표가 교육기관의 경제적 자유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케냐에서는 고등법원이 사립학교 학생들이 아닌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 정책을 허용했다. 이 조치는 빈부격차를 줄여 실질적 평등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평등권과 차별로부터의 자유의 실현에 국가가 완전한 효력을 부여할 것을 약속하는 케냐 헌법 제27조 제6항과 일치한다. 이는 국가가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평등권의 실현과 차별로부터의 자유에 완전한 효력을 부여할 것을 약속하고, 여기에는 과거의 차별로 인해 개인이나 단체가 입은 불이익을 시정하기 위해 고안된 적극적인 행동 프로그램과 정책이 포함된다.
40. 상징적인 수준에서, 적극적 조치는 지속적인 빈민차별로 인해 빈곤에 처한 사람들이 직면하는 특정한 어려움을 인식하고, 따라서 사회가 “성과”를 기반으로 결과를 분배한다는 주류적 서사에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분야별, 전문 영역의 수준별 다양성 증가는 소외된 배경을 가진 청소년

년과 청년들에게 롤모델을 제공하고 그들의 "희망의 창"을 열어준다. 그것은 "집단 간 접촉 이론"으로 알려진 사회 심리학의 한 분야에서 보여지듯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감소시킨다. 예를 들어, Gautam Rao는 델리의 엘리트 학교들이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에게 더 많은 공간을 개방하도록 한 후 가난한 아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발견했고, 515개의 연구를 검토한 결과 94%의 사례에서, 그룹 간 접촉만으로도 (즉, 다양성 증가) 편견이 감소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더 큰 다양성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의 실제 경험을 고려하기 때문에 기관으로 하여금 더 나은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간접적인 (무의식적인) 차별의 위험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그러한 기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저소득층의 구체적인 상황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VI. The role of intersectionality교차성의 역할

41. 사회경제적 취약성은 특히 그것이 민족성이나 성별과 같은 다른 “관습적인” 지위들과 결합될 때 개인들을 차별에 노출시킨다. 나아가 관습적으로 차별을 받아 온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특히나 그 구성원이 자산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경우, 그 개인을 차별의 위험에 노출시킨다. 오직 이 교차성을 언급함으로써만 이처럼 다양한 “평가절하된 사회적 정체성들”의 결합에서 나오는 경험이 적절하게 이해될 수 있다.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권리에 대한 위원회는 Trujillo Calero v. Ecuador 사건에서 교차적인 차별을 젠더, 쇠약함, 나이, 그리고 경제적 지위라는 바탕에서 찾았는데, 이는 빈곤한 여성들이 사회보장의 혜택에 접근할 때 마주하는 장애물들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것은 교차적 차별이 “특별한” 혹은 “엄격한” 정밀 조사를 촉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것은 Gonzales Lluy y Otros v. Ecuador 사건에서 수혈에 따라 HIV 양성 진단을 받은 한 아이가 그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낙인찍기와 차별을 마주하게 된 상황을 미주인권재판소가 접했을 때 명시적으로 인정되기도 했다. 미주인권재판소는 그 중에서도 그 아이가 HIV를 가짐으로서, 여성으로서, 장애를 가짐으로서, 그리고 빈곤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가 되는 것의 결과로서 교육에 대한 접근을 제한당한 사례들을 언급했고, 이러한 특징들의 결합이 “특정한 형태의 차별”을 낳았다고 말했다. 대규모 소 방목장의 노동자들의 노예와 같은 노동조건을 고려한 Hacienda Brasil Verde Workers v. Brazil의 사례는 미주인권재판소가 혜택에 대한 논의를 할 때 미주인권협약의 1 (1) 문서에 따라 “경제적 위치”에 근거한 구조적 차별에 의해 수행된 중심적 역할을 강조하도록 이끌었다. “교차적인” 유형의 분석에 기댈으로써, 그것은 노동자들이 가난하고, 문맹이고, 아프리카인들의 후손이라서 겪는 특정한 피해자와 취약성을 강조했다.
42. 교차성을 인식하기 위해, 평등 대우 법안은 차별을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금지된 차별의 이유들에 근거한 행위 혹은 금지된 이유들의 조합의 효과”를 포함하도록 차별을 정의해야 한다. 남아프리카 헌법의 9조 3항은 하나의 주장에서 여러 근거들(“하나 이상의 근거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차하는 형태의 차별이 다뤄지도록 한다. 이는 계급, 인종, 그리고 젠더 불평등이 밀접하게 얽혀 있는 국가들에서 특히 중요하다. 남아프리카 헌법 재판소는 그 요소들 사이에 종종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완전히 독립적

인 범주로 들어가도록”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상기시켰다.

43. 이러한 공식화는 성별이나 인종, 장애 등의 요소들이 사회경제적 조건들과 결합하여 작용할 때, 심지어 차별의 피해자들이 전통적 신분이나 빈곤만으로 차별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차별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보장한다.
44. 교차성의 인식은 또한 특정 제도가 특정 그룹에 대한 특정 정책 또는 규제의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경우에 그러한 그룹에 대한 상이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하다. 예를 들면, 2005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국가농촌고용보장법"은 별도의 수입원이 없는 농촌 가구에게 최소 100일 간의 공공 사업 프로젝트 고용을 보장한다. 이 법과 그 시행 규정의 많은 조항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특정 그룹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성들에 대한 사레이고(고용 기회의 3분의 1은 그들을 위해 설정되었다), "지정 카스트"(달리트/불가촉 천민)와 "지정 부족"(토착 공동체들)의 구성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식적인 데이터는 여성들, 지정 카스트, 그리고 지정 부족이 이 프로그램으로부터 얼마만큼의 혜택을 받는지를 추적한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는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여성 중 지정 카스트와 지정 부족들의 대표성, 또는 지정 카스트와 지정 부족 범주 중 여성의 대표성에 대한 지표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정 카스트나 지정 부족들에는 여성이 거의 포함되지 않았거나, 지정 카스트나 지정 부족민의 구성원인 여성들이 이러한 그룹들에서 오는 프로그램 참여자들 중에서 불충분하게 대표되었을 수 있다. 반면, 교차성을 고려하는 것은 여성뿐만 아니라 달리트 또는 토착 공동체의 구성원, 또 해당 그룹들 출신의 여성들이 적어도 농촌 인구 안에서 그들의 대표성에 대략적으로 비례하는 정도로 프로그램의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45. 남아프리카 인권위원회가 2017/18 평등 보고서에 언급하였듯, 정책의 지침으로서 교차성이 특히 중요한 것은, 그 정책이 성별 또는 민족성과 같은 기준에 의해 수혜자가 된 그룹의 가장 부유한 층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인과 전통적인 지위 근거를 모두 고려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면, 인도에서 시행된 적극적 조치 프로그램들이 오직 특정한 카스트나 민족 그룹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상황에서는, 해당 프로그램들이 무슬림들처럼 가난에 의해 불균등하게 영향을 받고 역사적 차별을 마주하는 특정한 그룹들을 적절하게 보호하는 데 실패할 수도 있다. 또한 그것들은 대상이 되는 그룹들 안에서 (소위 "거품층creamy layer"이라고 불리는) 좀 더 잘 살고, 더 잘 교육받은 이들에게 먼저 혜택을 주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장 불이익을 받는 이들은 돕지 못하는 위험에 따라 카스트 내부의 이질성들을 언급하는 데에도 실패할 수 있다. 1990년에 예약 시스템이 "기타 후방 계급들"로 확장되어 사회경제적 분류 기준을 적극적 조치의 목표 인구 집단의 정의에 도입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고, 인도의 헌법은 2019년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임의의 부문들에 있는 시민들의 발전을 위한 특별한 규정"을 도입하기 위해 수정되었다. 이는 카스트가 더는 사회적 후진성을 감지하기 위한 유일한 분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함으로써 빈곤에 바탕을 둔 차별에 맞선 싸움에 대한 일진보를 보여준다. 동시에, 카스트에 바탕을 둔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는 동안, 특

정한 카스트에 바탕을 둔 적극적 조치 프로그램들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빈곤에 바탕을 둔 차별에 맞선 싸움은 다른 형태들의 차별에 맞선 싸움을 보완해야지, 약화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VII. 결론

46. 모든 국가는 그들이 만든 반차별의 프레임이 사회경제적 불리함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빈곤층을 직간접적으로 차별하거나 그들이 직면한 특정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유연성을 제공하지 않는 규칙은 개정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이 그러한 형태의 차별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민간 주체들(집주인, 고용주, 사립학교와 병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금지가 필요하다. 가난한 사람들이 직면한 차별의 구조적 성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빈민차별의 현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주택, 고용, 교육 등의 분야에서 빈곤한 사람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47.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단서가 필요하다. 첫째, 법원이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차별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필요하다. 소송비용으로 인한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법적 지원 제공 외에도, 차별 사례를 다루기 위해 특별히 구성된 전문재판소 창설이 검토될 수 있다. 남아프리카에서는 2000년 평등 촉진 및 부당한 차별 방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별 피해자의 사법 접근성을 개선하고 신속하고 저렴한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평등 재판소"가 설립되었다. 이 해결책에 촉발 받은 인도 법률 정책 연구 센터는 같은 내용을 그들의 평등 법안 초안에 포함시켰다. 이는 다른 단체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다.
48. 둘째로, 사회경제적 불리함을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나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약자 정책이 진정한 기회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저소득층 지원정책의 대안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는 (입학생의 일정수를 할당하는) 보호정책(reservation policy)이 실시되고 있지만 대학 입학 전 준비, 대학 참여, 대학 학업성적에 격차는 계속 남아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경제적으로 불리한 학생은 고등교육 이전 및 고등교육 기간 내내 보다 나은 지도를 받을 필요가 있다. 차별 철폐의 틀을 보다 공고히 한다고 해서 빈곤을 영속시키는 사이클을 끊기 위한 교육, 주택, 사회적 보호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49. 마지막으로, 주택, 교육, 고용 등 사회경제적 권리 향유와 관련된 영역에서의 빈곤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가 정치권력의 불균형에 대처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인도에서 사회적 약자 정책은 공직에서 보다 균형 잡힌 대표를 확보하기 위해 선거 할당으로 확대되어 카스트에 기반한 차별과의 싸움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러한 할당으로 인해 길거리에서의 배제는 5분의 1로 줄어들었고 공직에서도 어느 정도 재분배가 이루어졌다. 국제 불가촉천민(Dalit)연대 네트워크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의 또 다른 이점은, 일과 교육에 대한 접근성의 개선 이외에도, "불가촉천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공간과 자신감을 제공했으며, 그들이 권리를 더

주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